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202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5일 김현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6.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7.16.) 상정,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9.3.)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26.) 상정, 축조심사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현의원)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취지나 그 존재 의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

을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중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해오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을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위촉하거나 의사정족수를 5인으로 하려는 입법취지 및 최소 3인의 재적위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명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의 취지와 함께,
- 의사정족수 변경 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 상임위원 5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한 안건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방통위원의 구성 취지나 존재 의의에 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와 헌법에서 개별 법률로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 개정안과 같이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나 개의정족수가 지나치게 높아서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2명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회의를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국회법에서도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방심위 관련하여서도 방송이 심각한 편파성, 허위조작 등을 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방송심의를 목적인데 개정안은 방송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심위에 문제를 삼는 방식이고, 방송심의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최형두 위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상화될 사안으로, 의결정족수를 두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방통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검증 과정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방통위회의록 작성·보존 관련 사항도 기본규칙에 명시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재확산 등의 문제를 심의하는데 이를 생중계하고 공개하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 자체와 반하는 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최형두 위원).
- 방심위 회의와 관련해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가 고장이 나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된 점이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야당 후보에 대해 임명이 지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불비로 인한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음(김현 위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표결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

8. 기타사항

입법청문회 실시(2024.6.21.)